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체계 도입하고 수요 고려한 지정기준·운영주체 검토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73.8%는 개인사업체로 연중 지속 운영에 어려움

노인의 간병과 요양을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지정·관리감독을 받는 지정제로 운영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응답 교육기관의 73.8%가 개인사업체로 확인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2018년 한 해 평균 수강생은 153명이었고 1.2명의 행정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연평균 수강생 206명, 행정인력 3.4명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수의 교육기관은 연중 3회 실시하는 자격시험 시기에 집중 운영되고 규정상 교육기관 강의실은 양성교육과정만 운영 가능하여 연중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기관 지정 시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로 공급조정 기능 마련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시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거리 제한 규정을 포함한 지정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무분별한 교육기관 개설 등 신규기관 지정 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기관 지정은 교육기관 공급, 곧 요양보호사의 공급량과 관련이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1만 5천여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2018년 기준 누적 자격증 소지자가 14만여 명으로 집계돼 교육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요양보호사 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기관을 적절하게 공급하려면, 2~3년 주기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요양보호사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고려해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기관 간 거리제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치구 또는 권역별로 요양보호사의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평가체계 도입해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하고 교육수준 질도 높여야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수단이자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면 정기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방법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정갱신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평가 수행 주체는 교육기관 평가 시범사업의 경험이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이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평가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 위해 업무대행·위탁방안 모색 필요

서울시는 약 120여 개의 교육기관을 1명의 공무원이 관리 감독하고 있어 지리적 관할 범위가 넓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는 유일한 경로로, 교육기관의 교육수준이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접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발족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19년 발족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돌봄 분야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며, 교육·훈련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주된 설립 근거 중 하나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교육을 담당할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교육기관과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자치구에 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일부 이관한다면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학원으로 볼 수 있다면, 학원 인가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업무로 인식되어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도 개선해 연중 지속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교육기관 운영지침 수립

장기요양과 관련된 사항의 대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리·감독 권한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시·도가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울시 실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업무의 책임과 위계가 혼돈된 상황에서 교육기관은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외 강의실 사용 권한을 확대하거나 학습교구와 수강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민간이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 장기적 노력 필요

공공의 성격을 갖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민간 기관 운영상 마찰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이다. 국가에서 돌봄의 책임을 표방했지만, 정작 전달체계는 대부분 민간을 활용해 구축한 모순적인 상황의 부작용으로 판단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이라도 돌봄의 국가책임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가나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